



國際發明展 出品費 지원

새해부터 1人當 年間 3件 한도내에서

새해부터는 제네바·뉴욕·西獨 등 國際發明展에 發明品을 出品하는 發明人에게 出品補助金이 지원된다.

새해부터 施行하는 관련 告示 第6章을 옮겨 신는다. (이告示 全文은 本誌 9月號 74~78p에 실려있음)

第6章 國際展示會出品 등 지원

第38條 (國際展示會出品 등 지원

特許廳長은 優秀發明의 海外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國際展示會 出品者에 대한 出品補助金 및 受賞者에 대한 補償金を 지급할 수 있다.

第39條 (出品補助金 및 補償金 지급대상)

① 出品 補助金은 協會가 出品업무를 주관한 國際展示會의 出品으로서 1人當 年間 3件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② 補償金은 第1項의 出品중 入賞한 發明·考案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國際展示會에서 同一人이 2개 이상의

出品에 受賞한 경우에는 그중 격이 높은 1개만에 대하여 지급하며, 同一 또는 類似한 發明·考案品으로 다시 入賞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40條(出品審査委員會설치)

① 優秀한 發明·考案을 選別出品하기 위하여 協會에 出品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出品審査委員會는 회장이 정하는 出品의 審査基準에 따라 審査하되, 發明品의 技術的 優秀性, 다른 國際展示會에의 出品여부, 特許 또는 實用新案 登錄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③ 出品審査委員會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1條 (지급기준)

①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品補助金은 건당 出品費의 80%범위내에서 지급하며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大賞은 200만원 이내
2. 金賞(특별상, 준대상포함)은 150만원 이내
3. 銀賞(금은상 포함)은 100만원 이내
4. 銅賞은 50만원 이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할 出品補助金 및 補償金 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조정한다.

尖端技術분야 全 公開 投資·研究 重複 事前防止 爲해

特許廳은 尖端技術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全面公開公報를 발간할 예정이다.

特許廳에 따르면 지금까지 發明人·出願人·請求範圍 등 書誌의 사항만을 公開해 오던 特

許出願 公開公報를 내년하반기부터 尖端技術분야에 한해 全面公開키로 하고, 서지적 사항 외에 發明의 상세한 내용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